

초빙교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제5항의 초빙교수 자격과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초빙교수”라 함은 교육 또는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육·연구에 종사하도록 임용된 자를 말한다.

제3조(자격) ① 초빙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② 초빙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한 자
2. 경력과 식견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
3. 교육 및 연구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교육경력 및 연구실적 환산율은 「교원인사규정」 제18조제1항의 <별표 1>에 의한다.

제4조(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대학교 초빙교수로 임용될 수 없다.

제2장 임 용

제5조(정년) 초빙교수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다만, 정년에 도달한 초빙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전이라도 그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 퇴직한다.

제6조(임용일)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또는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임용기간) ①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이 학기 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② 삭제 (2019.8.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 할 수 있다.

1.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6개월 이하) 또는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초빙교수가 필요한 경우
2. 학교 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1년 미만의 연구 또는 산학협력에의 참여를 위하여 임용 하는 경우

3.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는 제외한다)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자를 임용하는 경우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부지원사업의 재원(한국연구재단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등)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8.22.)
- ⑤ 임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재임용 통지가 없으면 임용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

제8조(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 ① 부서에는 비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심사 및 심의를 위하여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겸임교수등신규임용심사위원회는 부서장이 임명하는 2인 이상의 관련 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제9조(신규채용) ① 신규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으로 구분한다.

② 공개채용은 기초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기초 심사와 전공심사를 통합하여 심사하거나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특정인을 대상으로 일부 심사를 생략할 수는 없다.

③ 신규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10조(임용) ① 임용기간, 강의시간, 임금, 면직사유, 복무 등의 근무조건을 정하여 서면계약하여 임용한다.

② 임용에 관한 세부내용은 따로 정한다.

제3장 복무 및 처우

제11조(강의시간 등) ① 초빙교수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9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② 담당 강의시간은 매 학기 변경될 수 있다.

③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경우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학점이 인정되는 교과목에 한하며, 비교과 및 계절학기 강의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교과목에 대한 강의를 제외한 특강, 연구업무 및 기타 지정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다.

제12조(복무 및 처우) ① 「사립학교법」, 정관 및 본 대학교에서 정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적용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여부 및 퇴직급여 지급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계약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학과(부)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임금) ① 임금은 담당 업무(강의, 연구업무, 기타 지정업무 등)를 준비·시행하고 이를 부수되는 업무처리에 대한 대가를 모두 포함한다.

② 계절학기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

③ 기타 임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임용보고) 초빙교수를 임용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퇴직 및 면직

제15조(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6조(면직사유 등) ① 계약기간 중이라도 정직 이상의 징계나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면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학기가 종료되는 말일에 면직할 수 있다.

1. 소속 학과(부)가 폐지된 때

2. 담당 교과목이 폐지된 때

3. 제7조제3항에 따라 초빙교수 임용이 필요하여 임용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4. 임용기간 중 2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때

5. 기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해당된 때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해당하여 면직하는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9년 8월 1일 이후 신규 임용 및 재임용하는 초빙교수부터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초빙교수임용규정」은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초빙교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수, 임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초빙교수임용규정」과 계약내용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